

최윤정. 2023. “33년 만에 만나게 된 국제인권조약의 새 얼굴” 『인권연구』 6(1): 285-288.
Choi, Yun Jung. 2023. “Epilogue to the New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33 year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1): 285-288.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1.285>

[인권자료]

33년 만에 만나게 된 국제인권조약의 새 얼굴*

최 윤 정**

대한민국 정부가 1990년 7월 10일에 발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1007호; 이하 자유권 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조약 제1008호)¹⁾의 정정본이 지난 6월 9일 관보에 게재되었다.²⁾ 우리나라에서 해당 조약이 발효된 후 33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관보정정은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조약 국문본 번역오류 시정사업의 하나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외교 실무 및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다자조약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왔다. 특히 생명, 평등 및 자유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개인의 인권을 다루며, 국내 판결문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자유권 규약의 관보정정은 그 함의가 크다. 외교부는 정정작업의 실질적 성과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내부검토 및 국내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³⁾

* 이 글은 외교부의 재검독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 외교부 국제법률국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개인 자격으로 작성되었다.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미국 앨라바마주 변호사; 외교부 국제법률 조약과 외무사무관

1) 관보게재일 1990년 6월 13일. <https://www.mofa.go.kr>; <https://theme.archives.go.kr> 참조.

2) <https://gwanbo.go.kr>.

3) 2021년에 외교부 1차 재검독 후 학계 전문가 재검독이 실시되었고, 2022년 상반기에는 외교부 2차 재검독과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회의를

오랜 연구와 검토 끝에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번 관보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용어가 수정되었다. 첫째, 일본어본을 인용하여 부적절하게 의역된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규약 제4조와 제6조제3항에서 언급된 “derogate(또는 derogating, derogation) from”은 규정 또는 규약상 의무의 적용이 중지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 용어로 이번 정정작업에서 가장 많은 고심 끝에 수정된 용어이다. 기존 번역본에서는 규정 또는 규약상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번역되었으나 일본어본을 수용한 “위반”이라는 번역은 특정 기간 규약의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용어 본연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행정지, 적용정지, 유예, 이탈 등 다양한 국문 번역안이 있었지만, 이 용어의 원래의 뜻과 그 법적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국문 표현을 선별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정정본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미를 함축,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탈”이라는 용어로 최종 수정하였다.

둘째, 미흡하게 번역되었거나 국내 법령용어와 통일되지 않은 주요 형사법 또는 형사 절차법 및 그 밖의 법률 용어를 정정하였다.

먼저, 형사법 또는 형사 절차법 용어와 관련하여, 규약 제8조와 제9조의 “detention”은 기존의 “억류”에서 “구금”으로 정정하였다. 이 영문 단어는 각 나라의 국내 형사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형사 절차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하여 “억류” 대신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 “구금”으로 통일하였다. 다음으로 규약 제10조제2항의 “accused persons”은 기존 번역본의 “피고인”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신병 확보를 위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그에 따라 해당 용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진행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월까지 외교부 국제법률국 최종 재검토회의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심의관·조약과 과장·사무관·에디터 및 학계 전문가의 참석 하에 4차례 이루어졌다.

를」 제2조제3항상 정의에 따라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을 모두 포함하는 “미결수용자”로 정정하였다. 또한 규약 제10조제2항의 “convicted persons”의 경우 기존의 “기결수”가 의미상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위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를 인용하여 “수형자”로 수정하였다. 한편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에서 “charged”가 한국 형사절차상 용어로 정확하게 번역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한국의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공소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그 명칭이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으로 풀어 정정하였다. 끝으로 규약 제14조제5항에서 “reviewed by”의 경우 “재심”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재심”은 국내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의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동일한 법원에서 재심리를 받는 것으로, 하급법원의 판결 및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재심리를 받는 해당 조항의 내용상 적절하지 않아 “심리”로 변경하였다. 그 밖의 법률 용어로 규약 제6조제4항의 “pardon”의 경우 이 조항의 성안 배경 및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고, 국내 「사면법」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조항의 첫 번째 문장의 “사면”을 두 번째 문장과 같이 “특별사면”으로 통일하였다. 규약 제14조제1항의 “suit at law”는 기존에 번역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또는 그 외 영역의 소송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의미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소송상”으로 정정하여 관련된 개념을 모두 포괄하였다.

셋째, 규약 제28조의 “Human Rights Committee”는 오역으로 “인권이사회”라는 기존 번역을 “인권위원회”로 정정하였다. 해당 용어는 “Human Rights Committee”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와의 구분을 통해 두 용어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번 정정은 자유권 규약의 성안 배경을 비롯한 조문별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외 여러 법령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적 작업으로 집단 지성의 협력과 협업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조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를 돕고 동시에 국제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조약의 정정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